

한일 양국 간의 영토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 독도문제 해결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최장근**
nihonbu@dae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한일 양국의 영토인식 차와 해결가능성 |
| 2. 한국의 독도 영토 인식 | 5. 맺으면서 |
| 3.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인식 | |

주제어: 일본영토(Japanese territory), 한국영토(Korean territory),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독도(Dokdo), 다케시마(Takeshima), 영토인식(Territorial Recognition)

1. 들어가면서

한국은 역사적 근거와 전후의 정치사적 과정을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1) 그런데 일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2) 섬은 분명히 하나인데 두 나라가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두 나라 간에는 반드시 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정부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고유영토이지만 다시 영토편입조치를 취하여 확립한 '새로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3)

* 본 연구는 2015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집행된 것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1)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한기(1969)『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출판부, 內藤正中·金柄烈(2007)『史的檢証 竹島·独島』岩波書店, 內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新幹社, 송병기(1999)『鬱陵島와 獨島』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2004)『독도영유권 자료선』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 2) 가장 오래된 논리로서, 奥原碧雲(1906)『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奥原碧雲(1906)『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奥原碧雲(1907)『竹島沿革考』, 『歴史地理』第8卷 第6号,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川上健三(1953)『竹島の領有』日本外務省条約局, 田村清三郎(1954)『島根県竹島の研究』島根県, 최근 보완된 논리로서, 대표적으로 下条正男(2005)『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등이 있다.
- 3) 『竹島問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영토인 ‘다케시마(竹島)’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이런 인식은 타당한가? 이런 인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재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에는 독도관련사료가 대략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⁵⁾ 이들 사료를 영유권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일본영토로서 근거가 되는 것은 전혀 없고, 모두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들 사료 모두가 한국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⁶⁾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주지(無主地)’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선점한다’고 하는 시마네현(島根県)고시 40호 때문이다.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1905년 2월 22일에 고시된 것으로 조선영토를 침략한다는 열강의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내무성의 지적⁷⁾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주도하여 러일전쟁⁸⁾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은밀한 각료회의를 거쳐 독도의 침략을 결정한 것이다.⁹⁾ ‘신영토(新領土)’¹⁰⁾로서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였음을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인 독도박물관에 존재하는 600여점의 독도관련 사료를 모두 부정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억지논리를 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의 지금이나 과거 정권도 동일하지만, 과거 정권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영토정책을 펴지 못했다. 그런데 현 아베정권은 아주 도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현 아베정권의 독도정책의 정당성여부를 고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¹¹⁾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을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 2015.8.30)

4) 상동

5)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536&(검색일; 2015.9.30)

6) 「竹島問題研究會(島根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5.8.30)

7) 김수희(2015.10)「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론의 계보와 그 형성과정」『일본아베정권의 독도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명증』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 주관(역사박물관), pp.1-15

8) 일본이 한국영토를 노리고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만주를 전장터로 하여 러시아를 침략한 전쟁.

9)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참조

10) 김수희(2015.10)「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론의 계보와 그 형성과정」『일본아베정권의 독도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명증』, pp.1-15

11) 독도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법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적이 없다. 본고는 2014년 5월 17일 한국일본근대학회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논문임.

우선적으로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역대정권들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는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한일 양국의 역대정권들 중에는 적극적이었던 정권도 있었고 소극적이었던 정권도 있었다. 이들 정권들의 독도정책의 배경과 원인에 관해 규명한다.

한일 양국의 화해는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상호 이해 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지금의 대립관계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2. 한국의 독도 영토인식

2.1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역사적 근거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리해온 것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생각하는 독도영토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는 영토적 권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당시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신라시대는 동해 바다에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다. 울릉도를 본거지로 하는 우산국 사람들은 바라보이는 거리에 있는 독도를 타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을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상에 맡긴다. 고려시대에도 울릉도는 울릉성주가 다스리는 고려국의 한 성이었다. 울릉성의 사람들도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에 동해에 우산 무릉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이러한 인식을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고려 말에 왜구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여 울릉도를 비우기로 결정했다.¹³⁾ 조선국이 1403년 쇄환정책으로 섬을 비워서 관리하기 이전까지는 울릉도에 울릉도민이 살고 있었다. 울릉도민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영토인식이 자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던 신라, 고려, 조선 초기에

12) 1451년, 울진현조에 “울릉도(鬱陵島)는 현의 정동쪽 바다가운데 있다. … 일설에는 우산(于山)무릉(武陵)은 원래 두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高麗史』 권58 地理3 東界 蔚珍縣條)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검색일; 2015.9.30).

13) 1379년, “倭가 무릉도(武陵島)에 들어와 보름동안 머물다가 물러감”(『高麗史』 권134 叛逆 6 辛禰 1), 「독도박물관」 자료 인용.

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거리에 있었고, 한국영토인 울릉도사람들의 생활근거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독도가 울릉도의 일부라는 인식이 자생할 수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증보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반면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중앙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식했다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1696년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어부들에게 울릉도도해 금지령을 내려서 울릉도와 독도¹⁴⁾ 방면으로 출어를 금지했다. 이렇게 근대이전 역사로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

일본은 근대국가가 되면서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했고, 이로 인해 일본어부들이 울릉도, 독도 근해에 출몰하게 되었다. 급기야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의 혼란기를 틈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몰래 강제점유를 하고 있던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각료회의로 거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고시 40호로 독도를 침탈하려했다.

대한제국측(심홍택군수)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28일이었다. 그 시점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1905년 9월 포츠머스조약으로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그 결과 한국 경성에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이후였다. 일본은 시마네현 관리를 통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구두로 통보했다.¹⁵⁾ 이에 대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던 심홍택 군수는 시마네현 관리의 진술을 바로 다음날 1906년 3월28일 긴급으로 대한제국정부에 보고했다.¹⁶⁾ 이를 접수한 총리대신과 내부대신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단정하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사실을 1906년 5월1일자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¹⁷⁾ 이를 볼 때 대한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본제국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제의 대한제국 영토침탈은 계속되어 그 5년 후인 1910년 대한제국의 영토를 강제적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순서로 한국 전체를 병탄한 것이다. 그러나 1905년 편입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영토조치로서 불법조치이다.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1945년 패전으로 막을 내렸다. 일본은 연합국이 요구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겠

14) 돛토리번과 막부 사이에 질의 응답한 7개 조항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15)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21-234

16) 상동

17) 상동

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한 모든 영토를 수복하기를 원했다. 심지어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 중앙정부 관할 하의 일본영토가 된 대마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정도로 영토의식이 고취되어 있었다. 작은 암초에 불과한 두 섬, 파랑도와 독도이지만, 일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영토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인식은 1946년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파랑도와 대마도는 일단 제외되었지만, SCAPIN 677호에 의해 울릉도, 제주도, 독도까지를 한국영토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연합국은 ‘SCAPIN 677호에서의 한국 영토 독도’라는 결정을 바탕으로 독도영유권에 관해 무인도라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지위결정을 피했던 것이다.¹⁸⁾

2.2 한국의 실효적 독도 관할 통치와 영토인식

한일 간에 독도영토문제가 시작된 것은 1693년 안용복이 1차로 일본에 도항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¹⁹⁾ 1696년 2차도일 때에는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의 강원도 소속으로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있다는 것을 일본측에 제시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했다.²⁰⁾ 그 때문에 일본 막부는 1696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여 ‘죽도’(울릉도)의 도해허가증을 갖고 있는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해를 금하는 금지령을 내렸다.²¹⁾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독도와 울릉도가 위치한 오키섬 서북쪽으로 도항할 수 없게 되었다.²²⁾ 독도에 대해서는 ‘송도 도해면허’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소할 리가 없다.²³⁾ 일본영토론자들의 주장으로는 막부가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계속적으로 일본영토였다는 것이다.²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영유권 인식 없이 영토

18)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지위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실효적 지배 상황을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 그 사실은 「일본영역참고도」(1952)나 「일본영역도」(1952)가 증명한다. 정태만(2015.10) 「일본영역참고도와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침략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영유권 명증』 독도연구보전협회 2015년도 학술대회, pp.55-70.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刊 참조.

19) 『肅宗實錄』卷30, 肅宗22年(丙子, 1696年)9月 戊寅(25日)條

20) 권오엽·大西俊輝註訳(2009) 『독도의 원초기록 원록각서』 제이앤씨, p.44

21) 돗토리번 심문서 7개조항, 송도는 호키번과 이나바번 두 번 어느 쪽의 소속도 아니다.

22) 도항금지 팻말을 설치했다.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을 막으려한 독도 팻말의 비밀」 『조선일보』 2010년 3월6일

23) 가와카미 겐조(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는 1656년 송도도해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池内敏(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참조

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가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하여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1906년3월28일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를 방문하여 편입조치한 일본의 신영토로서 ‘다케시마’의 존재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을 전달 받은 심홍택군수는 뜻밖의 어이없는 일이 생겨 바로 이튿날인 1906년 2월 7일 이를 조선조정에 보고했다.²⁶⁾ 조선조정의 내부(內部)는 한국영토였던 독도에 대해 일본이 러일전쟁 중이었던 1905년 2월 22일에 침략적인 방법으로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로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고 하는 주장을 듣고 통감부에 항의했다.²⁷⁾ 그때에 통감부는 1900년 조선조정이 ‘칙령41호’로 정식으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석도(독도)’에 대해 행정적 관할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조선조정의 항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다.²⁸⁾ 그것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러일전쟁 종료이후 1905년 9월 4일(포츠머스강화조약)부터 1910년 일본에 병탄될 때까지 독도영토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했거나, 무력으로 굴복당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으로 취한 행위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조치를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국인 대한제국은 이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로 인해 일본에 독도를 침탈당했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²⁹⁾ 실제로 독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탄되어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게 된 때부터이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의해 패망당하고 한국은 독립과 더불어, 청일전쟁이후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가 원래의 나라에 반환된다고 하는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인 SCAPIN 677호위 조치에 의해 최종적영토적 결정이 내려지는 대일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게 되었다.³⁰⁾ 그래서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통치권을 강탈하려고 냉전이라는 동아시아체제 속에서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미국에 기대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다케시마 영토화’를 노렸다.³¹⁾ 그러나 대일

24) 外務省(2008)「竹島問題」『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참조

25)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토, 주권, 국민이고,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취득은 중앙정부만 가능하다.

26)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21-234

27) 「울도군배치전말」『황성신문』1906년 7월13일자

28) 통감부에 항의했다는 사실은「울도군배치전말」로 확인되지만, 통감부가 반론했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29)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제3대 외교부장관 변영태 장관의 말을 빌려 시마네현고시로 침탈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영토, 독도」

https://www.youtube.com/watch?v=muB4_LNZ2Rk&feature=youtu.be(검색일; 2015.9.30)

30)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49-264

평화조약에서는 미국의 관료 중에 일부³²⁾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도 있었다. 결국 영연방국가의 이의제기로 연합국이 합의한 견해는 무인도로서 영토분쟁지역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해결에 맡긴다고 하는 원칙³³⁾을 세웠다. 이로 인해 당초 일본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조약에 명기하지 못했다.³⁴⁾ 오히려 한국이 1946년 1월 18일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연합국이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³⁵⁾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SCAPIN 677호에 의한 독도영유권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³⁶⁾ 당시 국제법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³⁷⁾ 한국의 평화선에 대해 일부 국가가 호의적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³⁸⁾ 평화선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지하려했던 국가는 없었다. 단지 일본만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³⁹⁾ 1948년 주일미군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여 오폭사고로 한국어민 30여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하여 폭격연습을 중지함과 동시에 미국의 사과를 받았다.⁴⁰⁾ 그 후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다시 독도를 주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하도록 선동했다.⁴¹⁾ 이로 인해 미일행정협정의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다시 주일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지만, 한국 산악회가 독도를 방문했을 때 공군의 폭격훈련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했다. 이처럼 미국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관할통치를 인정했던 것이다. 연합국에

31) 시볼트를 통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탈취하려고 했다.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83

32) 시볼트, 딘 러스크, 벤 플리트 등 이들은 일본의 로비가 닿은 자들임.

33) 최장근(2005)『일본의 영토분쟁』p.75

34) 오카자키 카쓰오 외무대신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국무대신 오카자키 카쓰오 발언, 「지방행정위원회4호, 1953년 11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1』제1부 p.196

35)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중시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일공군의 독도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를 요구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철회했다.

36)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최종적인 지위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선 조치는 677호를 계승한 자위행위에 해당된다.

37)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은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채택되었다.

38) 1952년 1월 평화선을 획선했을 때는 문제시하지 않다가, 딘 러스크의 1953년과 54년의 벤 플리트가 평화선에 대해 언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합국 소속국가의 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竹島問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 2015.6.30).

39) 일본은 이승만대통령이 불법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라고 하여 ‘이승만라인’이라고 부른다.

40) 정병준(2010)『독도 1947』돌베개, p.191

41)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305-308

소속된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는 독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영토인식을 분명히 했고, 그 후의 한일협정⁴²⁾과 대륙봉협정이 체결되었을 때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은 1905년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영토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고유영토로서 관할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내내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섬 즉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⁴³⁾ 그래서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2.3 역대 한국정부의 독도 영토정책의 실태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었으나 미군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한국영토로 관할 통치하였다.⁴⁴⁾

이승만 정권에서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평화선을 설치했고, 독도에서의 실효적 지배

42) 1953년 11월 5일 외무대신 오카자키 가스오(岡崎勝男)는 한일회담에서의 독도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한일협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43) 우리 선조들은 신라시대에 울릉도(독도포함)를 영토로 하는 우산국을 편입하였고, 고려에는 우산성으로 행정 조치하여 울릉도(독도포함)를 관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수토정책으로 울릉도(독도포함)를 관리했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여 칙령41호로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서 굳건히 수호해왔다. 그러나 일제 침략기에는 국제질서에 편승하지 못하여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빼앗기어 국가 잃은 수모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고 국가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의지를 인정받아 영토, 국민, 주권을 수복하여 국가를 되찾았다. 연합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고 일본에게 무조건적으로 ‘침략한 영토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여 전쟁을 종결시켰다.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SCAPIN 677호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때 한국은 실제로 독도를 관할했다. 연합국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내리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하려고 일본의 로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44) 「6월 8일 당시 경상북도지사 曹在千의 참석 하에 독도폭격사건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서 ‘독도조난어민 위령비’를 건립함.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검색일, 2015.6.30)」

를 강화했다. 독도는 SCAPIN 677호에 의해 해방과 더불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했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독도’라는 명칭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일본이 이를 빌미로 독도 침탈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의 침입을 차단했다.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무장한 경찰을 주둔시켜 영토화를 공고히 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경찰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는 이승만 정권 내내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한일협정과 대륙붕협정이 체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의도를 견제하여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명확히 했고 이를 실천했다. 일본은 박정희 정부의 독도 영토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974년 대륙붕협정까지 이어져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북부대륙붕경계선을 설정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을 시작했다. 일본은 박정희 정권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은 소극적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에서 ‘독도밀약’ 같은 구두약속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⁴⁵⁾ 이는 일본의 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으로 채택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영유권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일본의 요구에 의해 독도에서의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두 정권의 소극적인 독도정책은 일본에게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김영삼 정권은 전 정권의 소극적인 독도정책을 변경하고 1997년 한국 국민이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선착장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본이 강한 반발을 샀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되었다.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상황에서 일본은 이웃나라의 불행은 행복으로 생각하듯이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년 기한을 정한 뒤 신 한일어업협정을 강요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독도가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토주권과 12해리의 영해주권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훼손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잠정합의수역이 되어버렸다. 그 폐해는 계속되어 일본의 우익성향의 인사들

45)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의 실체는...」 『중앙일보』(2007.3.19)

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심지어 독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정권의 순간 방침으로 일본의 침략적인 독도도발에 영토주권이 위협받기도 한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무대응의 상책’이라는 방침으로 매년 몇 번씩 도발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소극적인 독도정책의 부작용은 노무현정부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일본의 측량선이 독도를 조사한다고 하여 독도 12해리 진입을 시도하여 한일 양국의 공선이 대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즉, 2006년 한국이 독도근해 해산의 이름을 지어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려고 계획했다.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측량선을 독도에 파견하여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해산명칭의 등재를 유보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인 독도정책으로 전환했다. 김대중 전 정권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기점’을 선언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포기하고 ‘독도기점’을 선언했고, 또한 독도에 관광객들의 입도를 허가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8년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소극적인 독도정책을 추진했다. 임기 말에는 소극적인 독도정책을 변경하여 2012년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입도했다. 이로써 대통령이 현지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된다.

이처럼 역대 정권들이 독도의 영토주권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매국’과 ‘애국’ 정권으로 구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애국’ 대통령으로 남을지 궁금하다.

3.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인식

3.1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역사적 근거

일본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7세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두 가문의 어부가 70여 년간 울릉도를 내왕하였을 때, 독도를 기항지로 삼았고, 강치잡이도 했다고 하여 일본영토로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를 확인할 증거가 있을까?

일본이 독도와와의 인연은 1667년에 제작된 『은주시청합기』에 의하면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오키섬의 서북쪽에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은주시청합기』에서는 당시 조선과 일본의 경계를 오키섬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송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아니고,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1696년 일본의 두 가문의 어부가 70여 년간 울릉도를 내왕했을 때 울릉도에서 우연히 조선인 안용복을 만나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고, 그것은 다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조사하여 돛토리번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하는 답변서를 받고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후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로 변신하면서 국경선을 명확히 한다는 명목아래 영토를 확장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외무성관리를 부산에 파견하여 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소속이 되었는지를 조사했다.⁴⁶⁾ 그때에 이를 조사한 외무성관리는 울릉도는 조선의 소속임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메이지정부에 올렸다.⁴⁷⁾ 그렇지만 독도는 2개의 암초로 된 무인도이었기에 당장 영토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메이지 신정부가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로서 편입하겠다는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았다.⁴⁸⁾ 1903년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강치잡이를 하던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몰래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조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치를 독점하기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취득하려고 일본정부에 문의하였다. 그때가 마침 러일전쟁 중이어서 일본외무성의 정무국정 아마자와 엔지로는 내무성이 일본의 침략성이 열강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⁴⁹⁾ 러일전쟁에 필요한 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나카이를 이용하여 독도침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나카이로 하여금 독도 편입 대하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편입조치를 취하고 그 독점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정부가 은밀히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이 바로 시마네현 고시40호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유럽으로부터 수용한 국제법에

46)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소속이 된 시말」 『日本外交文書』第3卷, 事項6, 文書番號 87, 1870年4月15日字.

47) 상동

48) 하지만 ‘혹룡회 등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무주지 선점으로 영토로서 편입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계의 김수희 연구 참조

49) 「1877年3月17日條,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同」, 日本政府編『公文錄』内務省之部1,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의한 영토취득방법을 악용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주변국가, 혹은 그 영토의 일부를 분할하는데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독도도 일본이 국제법을 악용하여 한국영토를 침탈하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실제로 1900년에 칙령 41호에 의해 울도군이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해 국제법의 영토취득 이론인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하여 영토편입조치를 단행한 것을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⁵⁰⁾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로 독도의 편입조치를 취하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접수했다. 이것 또한 국제법을 악용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조약체결을 강요한 것이다.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한성에 일본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제국의 한국통치기관으로서 한국내정을 간섭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은 은밀히 러일전쟁 중에 독도편입조치를 취하고 1년이 지난 후 1906년 2월 시마네현 관리가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의 편입사실을 울도군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제국의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통감부는 한국의 내부대신으로부터 일본의 독도편입조치에 대해 항의를 받고,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1900년 울도군을 설치하여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통감부의 설치 목적이 조선 침략을 위해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대신의 항의를 묵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10년 일본이 양국이 동등한 지위로 통합한다고 하는 ‘한일합방’의 명목으로 한국을 강제로 접수함으로써 독도를 포함한 한국영토가 일본영토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과정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결국 일본은 연합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연합국이 요구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 결과 청일전쟁이후에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 원래의 국가에 반환되었다. 독도도 일본이 1905년에 편입했다고 하는 곳이므로 청일전쟁 이전에 침탈한 영토에 포함된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종전과 더불어 SCAPIN 677호로 해방 한국의 한국영토로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는 잠정적 조치를 내렸다. 일본정부는 패전으로 연합국의 중심국이었던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침략한 영토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움직여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최대한 일본영토로서 잔류시키려고 노력했다. 독도도 그 대상이었다. 일본은 일부 미국 관료의 마음을 움직여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식하도록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정부 전체의 인식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이 미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대일평화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조약을 이용하여 독도를 탈취하려고

50) 신용하(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21-234

했던 일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⁵¹⁾ 결국 한국이 SCAPIN 677호로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던 독도의 영유권을 변경하지 못했다. 연합국도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중단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SCAPIN 677호에 의한 관할통치권만 존재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선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활용하여 일본의 독도도발을 막았다. 일본은 한국전쟁 중에는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영토라는 풋말을 세우고 독도상륙을 시도했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으로 저지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54년부터는 독도에 주재하고 있던 울릉도경비대에 의해 독도상륙이 저지되고, 해군에 의해 독도근해의 진입이 차단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승만라인’은 국제법을 어긴 불법조치⁵²⁾라고 하여 한국이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한국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문서를 보내며,⁵³⁾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1974년의 대륙붕협정에서도 독도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관철시켰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조약에서 한국의 입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영토로서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입장은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1997년 한국에 금융위기상황이 도래하자 일방적으로 1965년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전으로 금융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독도 영토주권을

51) 해양보안청이 1952년에 작성한「일본영역참고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했다. 해양보안청은 대일평화조약 이후의 해양질서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대일평화조약 비준국회에서 일본 중의원에 배포되었다.

52) 오카자키 외무대신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1953년 12월 8일 죽도영유권에 대해, 「평화조약에 일본이 권리, 권원 등을 포기하는 지역은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일본의 영토였던 것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논의가 있다고 하면, 죽도가 평화조약 즉 전쟁 전 혹은 훨씬 전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였는지 아닌지를 밝히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죽도는 메이지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도 꼭 일본의 영토로서 취급해오고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평온무사하게 접거했지만, 강제번식사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헌 등을 봐도 일본영토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특수규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네 일본의 영토였던 것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영토라는 이런 해석을 취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이다.

53) 1953년 7월 15일 국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는 일본영토로서의 증거에 대해,「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사적 사실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후 여러 사령부 등의 조치를 보더라도 이점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가질만한 점이 없습니다. 원래 총사령부의 지령은 영토의 변경 등을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점령 중의 일시적인 조치를 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평화조약 안에서 일본의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한 지역은 명료하게 쓰여 있는 것으로 그 이외의 것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인 것이며, 또한 이른바 맥아더라인 등도 영토의 변경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史實)로 말해도 국제법적으로 말해도 일본영토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이었다.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주변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점정합의수역을 요구하였다. 한국은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독도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이기 때문에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입장이었다. 조약의 당사자였던 일본정부는 어업문제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런데 ‘다케시마’ 일본영토론자들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다케시마’기점의 12해리 영해도 일본영해라고 하여 한국에게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협정체결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표면적이고 영토내셔널리즘적인 해석으로 변질되어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양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은 아베정권에 들어와서는 특히 심화되었다고 하겠다.

3.2 ‘다케시마(竹島)’의 영토편입과 영유권 주장의 경과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갖게 된 것은 러일전쟁 때였다. 그 계기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어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정부로부터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려고 문의했던 것이다. 나카이는 1903년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고, 그때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카이는 다른 어부들도 독도에서 강치조업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타진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정부는 독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토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전에 중앙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17세기의 「죽도일건」 때나, 메이지 신정부도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4년시점의 일본정부는 나카이의 타진에 편승하여 외무성 야마자와 엔지로 정무국장이 시국상의 필요성에 따라 신영토로서 편입하여 대여해주겠다고 했다. 이미 이 영토는 나카이드 언급했고, 당시 내무성도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한국은 국력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의 간섭만 없으면 한국영토를 침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래서 러시아를 조선에서 배척하기 위해 러시아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한국 침탈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러일전쟁 상황에 독도가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섬인 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 없는 섬)’라고 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편입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가 알 리도 없었겠지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이라 간섭할 수 없었다. 일본은 전쟁 중이라서 독도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를 볼 때 일본의 독도 편입 의도는 애초부터 타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편입한 후 그 5년 뒤 1910년 한국을 강제로 일본영토에 병합하는 형태로 한국(영토)을 침략했다.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은 타국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힘의 논리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⁵⁴⁾ 결국 일본의 과도한 영토야욕은 연합국의 견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게 되어 침략한 영토는 모두 몰수 조치되어야 했다.

일본은 애당초 연합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일본영토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18일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연합국이 과도하게 일본의 영토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합국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연합국에게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여 일본의 주장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 마침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영,미의 자유진영과 대립되고 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편입시키는 의도로 일본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 특히 영토조항에서 일본은 포츠담선언에 의해 침략한 모든 지역이 일본영토에서 박탈되어야 마땅하지만, 최대한 영토주권을 잔존시키려고 노력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영토로 잔류시키려고 했다. 독도가 일본영토로 잔류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에 근거하여 편입하여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이미 일본이 편입하기 이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1905년의 편입조치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토인식은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영토팽창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은 타국의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에서 고유영토론을 갖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 소속의 연합국들이 반대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명령) 677호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던 독도의 지위를 변경하지 못했다.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은 이런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되었다

54) 일본은 1868년 근대일본을 건국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 우선적으로 아이누민족을 말살하여 그들의 영지를 일본에 병합했고, 1871년에는 유구국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했다.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는 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1904년 한일의정서, 같은 해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2차한일협약, 1907년 3차 한일협약, 1910년 한일 강제합병조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세계대전, 1931년 만주사변과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이어지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는 주장이다. 이는 옳지 않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즉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⁵⁵⁾ 실제로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 초안은 5차까지는 한국영토로 결정했고, 6차초안은 일본영토, 7차 이후는 독도의 지위에 관해 언급이 없어졌다.⁵⁶⁾ 최종적으로는 연합국은 ‘독도와 같은 무인도에 대한 영토분쟁지역은 다루지 않고, 오키나와와 같은 유인도에 대한 영토분쟁지역은 신たく치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⁵⁷⁾

따라서 영토팽창론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없던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역대정권들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한일협정이나, 대륙부협정에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묵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들도 표면적으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이 이승만대통령이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였다는 주장도 포기하지 않았다.⁵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한다.⁵⁹⁾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정부로부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가 합당하다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적 영토취득논리인 영토팽창론에 의한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이 침략적인 영토조치를 불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더욱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55) 일본영토로 귀속될 섬으로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섬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56) 김병렬(1998)「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진말」『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독도연구보전협회, pp.165-195 참조. 초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정병진, 이석우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음.

57) 최장근(2005)『일본의 영토분쟁』p.75

58) 일본 외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는 1953년 11월 5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 「그들은 그들대로 조선의 문헌 등을 인용해서 죽도가 옛날부터 조선의 영토였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승만라인과는 관계가 없이 그런 것이 생기기 훨씬 이전 즉 몇 백 년 전부터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모순적이다.

59) 오카자키 외무대신은 「일종의 국제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죽도라는 이름이 울릉도를 지칭했던 적도 있는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명백한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국제분쟁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은 일찍이 포기한 듯하다.

3.3 일본 역대정권의 독도 영토정책의 실태

요시다 시게루는 미군이 점령통치 기간과 대일평화조약체결을 전후해서 일본총리를 역임했다. 요시다 시게루 정권⁶⁰⁾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 이후의 독도문제해결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도 결여되어있었다.

대일평화조약은 요시다 정권에서 체결되었는데, 외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즉 「(죽도문제는) 평화조약의 내용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토는 일본 고유영토로 그대로 일본에 귀속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도는 당연히 일본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해 연합국측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의 영유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⁶¹⁾」라고 하여 국무대신 자신은 일본의 외무대신이 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해석하지만, 조약안을 만든 연합국측은 한국영토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실제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한국정부가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지를 요청했을 때 미국동군사령관이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한국국방부가 성명을 내었을 때, 외무대신 오카자키는 1953년 3월 5일 「지금까지 공문서 등으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이상 더 명확히 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애드벌룬 띄우듯 하는 성명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해 다루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하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⁶²⁾」라고 하여 상투적인 공문서로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것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 이노 전문위원이 외무대신의 공문서 항의에 대해, 「한국 측이 이승만 라인의 안쪽에서의 어업에 관해 추가로 제한을 두어 그냥 일본어선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60)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1946년-1947년, 1948년-1954년까지 일본의 민주자유당 의원으로서 제45, 48, 49, 50, 51대 총리를 역임했다.

61)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외무대신 발언「지방행정위원회4호, 1953년 11월 5일」『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1』제1부, p.196

62) 국무총리 오카자키 가쓰오의 발언「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1953년 3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63

성명을 내고 실제로 나포된 일본어선에 대해서 이승만라인 안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나포했다는 식으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만, 그러는 사이 한국은 이미 이라인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마네현(島根縣)에 속한 리양쿠르암이라 불리는 죽도가 일본의 영유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승만라인 내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일본어선의 자유로운 항해를 막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이것은 일본의 주권이 가진 영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며, 일본영유권 혹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 지금 외무대신께서는 단지 하나의 성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⁶³⁾라고 비판하자, 오카자키 외무대신은 1953년 3월 5일 「죽도로 가는 배가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⁶⁴⁾라고 하여 애당초부터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실제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일본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도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당연히 한국이 응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한 것은 일본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의 독도정책은 아주 소극적이었다.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1954~1956)정권,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1956~1957)정권,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957~1960)정권,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1960~1964)정권,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64~1972)⁶⁵⁾정권 모두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에 항의서를 보내는 정도였다.

한일협정체결 이후부터 대륙붕협정체결까지의 영토정책은 다음과 같다. 즉,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해결되어야한다고 아니고, 한국으로부터 분쟁지역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국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에도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일협정 이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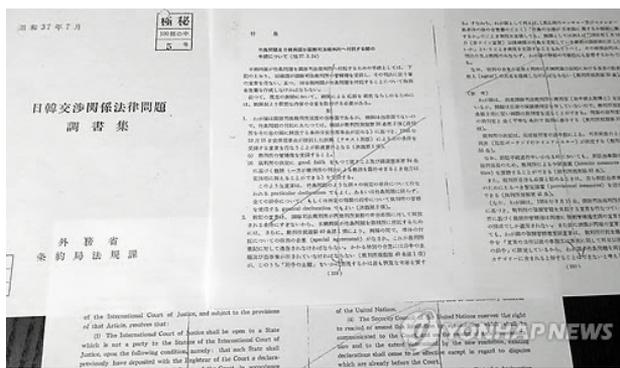
63) 단 이노의 발언「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1953년 3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p.63-64

64) 국무총리 오카자키의 발언「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1953년 3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64

65) 사토 수상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친동생이고, 1974년 노벨평화상 수상하고 한일조약을 체결했다.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일본의 독도정책은 소극적이었다. 소극적인 정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1972~1974),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1974~1976),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1976~1978)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1978~1980),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1980~1982),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1982~1987), 특히 시마네 현(島根縣(도근현) 출신인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1987~1989), 우에노 소스케(宇野宗佑: 1989~1989),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1989~1991),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1991~1993), 55체제를 종언한 비자민당의 일본신당 출신인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993~1994), 신생당 출신의 하타 쓰토무(羽田孜: 1994~1994),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1994~1996)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실효적 관할통치에 대해 항의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다시 자유민주당이 집권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1996~1998)정권은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1965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년이란 기한을 주면서 일본이 제시한 안에 동의를 요구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1998~2000)정권은 잠정적으로 한일공동관리 수역을 결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 이후의 모리 요시로(森喜郎: 2000~200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2001~2006) 정권에서도 독도에 대한 정책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은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던 것이다.⁶⁶⁾



<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조서집”(1962년7월 작성)>⁶⁷⁾

66)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에서 다루었음. 「한국, ICJ강제관할권 인정안해…일본 관할권도 적용시점 제약」『연합뉴스』(2014.6.10.)

그런데 시모조 마사오 등이 우익인사들이 시마네현을 움직여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고 시마네현과 현의회를 선동하여 시마네현 조례로 “죽도의 날”을 제정했다. 그후 이들은 시마네현의 자민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통해 자민당의원을 움직이고 일본 외무성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결국 아베정권은 일본정부의 내각관방부에 영토 대책 조정실을 설치하고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영토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부터 ‘죽도의 날’ 조례제정까지 일본의 영토정책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65년의 어업협정파기를 선언했다. 이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독도 선착장 건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결국 신 한일어업협정은 공동관리 수역으로 해석되는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 이 때의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은 아주 도발적이었다.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도 독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는 통산 3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 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하여 거절했다.

4. 한일 양국의 영토인식 차와 해결가능성

일본이 한일합병조약처럼 강제적인 방법으로 침략을 했다면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명확히 분리시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독도의 경우는 한국병탄 이전에 일방적으로 편입조치를 취하여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토팽창론에 입각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은밀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무주지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영토를 편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1905년 이전에 한국영토라는 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일본은 이를 부정한다.

첫 번째 독도문제의 해결가능성으로는 1905년에 무주지 선점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침략적이고 모순적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1905년 이전에 한국영토로서 관리해왔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 근거를 찾아내어 일본을 납득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

67) 「연합뉴스」(2014.6.10)

도 일본영토가 되어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얼마라도 일본의 권익을 인정받아야한다는 모순적인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독도문제의 근본요인은 먼저 편입당시에도 영토팽창의식에 의한 것이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전후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이 침략하여 팽창한 영토에 해당하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만일 일본이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이 포기한다고 할 때 한국은 고유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조류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해가는 것이다. 독도 영토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이 과거 침략적인 방법에 의한 영토팽창을 반성하고 독도문제에 대해 포기해야할 것이다.

셋째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지금처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여 그 사이에 본질적이든 정치적이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지 최대한 독도문제로 물리적인 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교적으로도 서로가 국익에 손해를 가져오는 소원한 관계는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으면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간에 영토문제에 대한 상호인식을 분석하고 영토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전망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은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으로 1905년 독도편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유사 이래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했다는 문헌적 기록이 있다. 반면, 일본은 유사 이래 독도를 관리했다는 문헌적 기록이 없다. 단지 러일전쟁 중에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편입했다고 하는 내용만 존재한다. 이처럼 오늘날 양국이 영토취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대립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과거나 지금이나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그러면서도 영토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정권도 있었고 적극적인 정권도 있었다. 반면 일본정부는 종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대일평화조약, 한일협정, 대륙봉합정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독도문제에 대처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거정권이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아베정권이 우경화 일색으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도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전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정책은 한국의 실효적 조치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에 측량선을 독도에 파견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선동했기 때문이다.

넷째로, 한일 양국은 독도문제에 대한 상호인식이 필요하다. 일방의 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분쟁이 격화될 뿐이다. 상호이해를 통해 독도문제 해결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천황제에 매몰된 일본문화의 내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극단인 요구만 계속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한국의 독도정책에 있어서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 나이토우 세이쥬우지, 권오엽·권정역(2005)『獨島와 竹島』제이앤씨
 독도연구보전협회편(2015.10)『일본아베정권의 독도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명증』독도학
 화·주관(역사박물관)
 박병섭(2011.12)「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 독도 심포지움』대
 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주체,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_____(2011)『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奥原碧雲(1906)『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_____(1907)「竹島沿革考」『歴史地理』第8卷 第6号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外務省(2008)「竹島問題」『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下条正男(2005)『‘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_____(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高野雄一(1964)『日本領土』東京大学出版会
 田村清三郎(1954)『島根県竹島の 研究』島根県
 _____(1996)『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内藤正中·金柄烈(2007)『歴史的検証独島・竹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毎日新聞社編(1952)『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刊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외교통상부, https://www.youtube.com/watch?v=muB4_LN2Rk&feature=youtu.be/
 「竹島問題研究會(島根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요旨>

한일 양국 간의 영토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 독도문제 해결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영토로 처리했다. 연합국은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하여 영토적 지위 결정을 피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고, 한국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은 ‘다케시마’가 근대 국제법의 영토취득 이론에 의해 취득한 영토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간에 이러한 영토인식 차가 있다. 지금은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은 일본이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갖는 날까지 독도의 영토주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he Territori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to Resolve the Issue of Dokdo**

The Second World War ended. Allies decided Dokdo is Korea’s territory with SCAPIN 677. Allies have not finally determin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Eventually the Allies had considered the uninhabited Dokdo and had avoided the decision of the territorial status. But Japan claimed tha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and were illegally occupied by occupying the Dokdo by the Peace Line of Korea. Korea was saying Dokdo is a unique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thinks that Takeshima is acquired as a new territory by international law. There are differences recognition of the territory between Korea and Japan. So Dokdo seems to conflict areas. Now is the time to pursue the universal values of the world. The Japanese now have to admit that Dokdo is Korea’s territory. Because the Allied regarded Japan took the territory of Dokdo.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 is to wait quietly until the day, Japan has a universal value of the world.